남천 The Sharp 프레스티지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 08. 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8.29)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기준)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순위청약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2019년 1월 29일 발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2018.08.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신청자는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 접수하여야 함)[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로 특별공급 당첨자발표를 기존과 달리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발표하오니, 특별공급에 신청한 청약자가 일반공급 순위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을 무효처리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2017.01.20.)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018.12.31.개정 반영)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청약 접수 시 주택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세대수의 30%를 가점제, 나머지 70%는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1세대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 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 · 저가주택 및 분양권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및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 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해 재당첨 제한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남천더샵프레스티지.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입주대상자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금지되며, 1주택 보유세대는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기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적 허용됩니다.
-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대한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또는 무효처리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가 적용되오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2순위로 청약가능
    ※ 해외에 장기체류중인 내국인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본 아파트에 당해지역으로 청약하실 수 없으며(기타지역으로 접수 가능) 당첨 및 공급계약시 교란자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지역(직장 포함)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즉, 지역(직장)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대상자는 각각 사업계획승인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대상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전역(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 2에 한함)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광교,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 투기과열지구 : 서울전역(25개구)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광명시 · 하남시 · 대구시 수성구
    ※ 투기지구 : 서울시(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해야 하므로 부산 이외의 거주자는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자격으로 신청해야합니다.(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시행법령」 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대출유무,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투기 적발자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 견본주택에는 확정형 기준 59A, 84A, 92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유형 및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해 당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 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해당 및 기타		
일정	2019.09.05(목)	2019.09.06.(금)	2019.09.09.(월)	2019.09.10.(화)	2019.09.18.(수)	2019.09.30.(월) ~ 10.2(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장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7 ※ 당첨자 외 입장 제한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무순위(사전 예약접수) 실시 안내**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의거 사전 예약접수를 실시하며, 정당계약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사전 예약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잔여세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예약접수자 대상 공급세대수가 없으므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성년자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단, 무순위 사전예약접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달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당첨자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 (경쟁 발생 시 잔여세대수의 100% 예비입주자 선정)
- ■ 유의사항
  - 본 무순위 사전예약 접수는 잔여세대 발생 시를 대비한 사전 예약 접수입니다.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순위 청약과 중복하여 접수 가능하오니, 무순위 사전예약 접수 이후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청약일에 반드시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랍니다.
  - 1인 1건만 신청가능(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 청약자격등을 위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무순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세대 동호수 등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남천더샵프레스티지.kr) (또는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전 예약접수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예약접수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에게 당첨자발표일에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당사에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